

從業員 持株制

본격화

食品製造業體등 30여 企業體서 實施

李 韓 圭

(韓國證券去來所)

企業利益分配에 참가

從業員持株制度란 從業員에게 自社의 株式을 取得 保有하게 하여 株主 即, 企業所有者로서 企業經營 및 企業利益의 分配에 參加시킬 것을 目的으로 하며 이 目的을 為하여 會社가 特別한 便宜를 提供함으로써 從業員의 自社株取得保有를 促進 조장시키는 制度이다.

그리므로 從業員이 會社로 부터 아무런 便宜를 받지 않고 會社와는 關係없이 株式市場에서 自社의 株式을 取得하는 것은 從業員持株制度가 아니다.

從業員持株制度라고 할때 크게 두가지로 나눌수 있는데 첫째 意味로는 會社가 從業員에게 어떻게 便宜를 提供하여 自社株式을 購入시키느냐하는 것을 말하는것으로 이는 美國의 從業員株式購入制度에 해당한다. 둘째로는 첫째 制度는 물론이고 利益分配制度, 貯蓄儉約制度, 株式償點制度 等을 포함하고 있다.

從業員持株制度를 創設한 動機와 目的是 여러가지를 들 수 있는데 그 主要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從業員의 勤儉貯蓄을 目적으로 從業員이 貯蓄하므로서 會社에 對하여 도움을 주고 나아가서는 恩給制度의 代用으로 活用, 老後의 生活安定의 一助가 된다.

(2) 勞使間의 協助를 도모하는 계기가 된다 從業員의 利益과 企業利益間에 共通關係를 갖게 하고 從業員을 株主經營者인 地位에 서게 함으로써 勞使間의 對立意識을 완화시킬 수가 있다.

(3) 從業員의 愛社精神, 企業에 對한 關心을 제고하여 勞動意欲을 增進시킨다. 즉 從業員의 特別한 利益을 提供한다는뜻이다. 이는 從業員의 利益과 企業經營간에 共通關係를 갖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從業員을 企業經營等에 參加시킴으로써 從業員의 愛社精神 또는 企業에 對한 關心을 제고하여 勞動意欲을 增進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4) 資本調達에 便利하다. 從業員의 自社株保有熱을 強化하므로서 資本을 調達할 때에 失權株를 매우 적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節次가 간편하고 新株發行費用을 節減할 수가 있다. 特히 非公開會社, 小資本會社 等自己證券市場이 협소한 會社에 있어서는 資本을 調達하는데 매우 便利하다.

(5) 企業의 民主化 經營民主主義를 達成할 수가 있다. 株式會社로서의 企業體는 物의要素인 資本과 人的要素인 勞動力を 불가결한 構成要素로 하고 있어 企業收益이 資本과 勞動力의 共同所產인 以上 勞動力의 提供者인 從業員에게도 企業經營 및 企業收益의 分配에 참가시키는 것이 當然하다.

(6) 從業員의 移動을 抑制할 수가 있다. 美國에서는 속련勞動者の 不足에서 生產장애가 크고 恒常 經營者の 고민이 되고 있다. 그 對策의 하나로 이 制度가 利用되고 있다.

(7) 安定株主層을 確保 強化할 수가 있고 株價安定의 一助도 된다.

(8) 外部資本에 依한 企業支配를 防止할 수가 있다. 特히 株式을 公開하려는 會社 혹은 外資를 導入하려는 會社에 있어서는 企業防衛의 立場에서 적지 않게 이 制度를 利用하고 있는 것 같다.

(9) 企業의 外部에 對한 P.R. 廣告効果를 볼 수 있다.

은 다음과 같다.

첫째 會社의 經營方針으로 결정, 實施되어야 한다. 即 從業員에게 自社株를 所有하도록 하는 것을 會社가 經營方針으로 決定하여 推進하지 않는다면, 制度로서의 自社株保有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從業員이 獨自의 意思로 他人 또는 流通市場等에서 取得하는 경우에는 從業員持株이기는 하나 곧 制度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從業員持株制度는 어디까지나 會社의 方針에 依하여 繼續的으로 이루워 질때에 制度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會社의 特別한 便宜를 제공하여야 한다. 即 從業員이 自社의 株式을 取得하기 위하여 資金의 補助로서 장려금의 交付나 賣買手數料의 負擔等에 있어 購入資金의 貸付에는 無利息 또는 低利에 依하여 貸付하는 方法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方法에는 購入資金의 分割償還, 積金方式採擇, 融資 알선, 借入保證 또는 그 利子負擔等이 있으며 贈與에는 新株券引受의 付與와 低價讓渡, 功勞株의 無償贈與等이 있다.

셋째 自社株의 取得 및 이의 長期保有가 目的이어야 한다. 이는 어디까지나 종업원의 財產形成에만 目的이 있는 것이 아니고 會社의 株主安定과 愛社精神을 함양시킴에 있기 때문에 종업원이 取得하는 株式은 自社株式이어야 하며 原則的으로 이를 他人에게 讓渡하지 않고 長期間保有하여야 하는데 의의가 있다.

自社 株를 所有토록 권장

從業員持株制度의 性格上 갖추어야 할 要件

永久的인 制度로 實施

네째 自社株 取得과 保有가 制度化 되어야

한다. 即 一時的이 아닌 永久의인 制度로 하여야 한다. 종업원 持株制度에 있어서는 株式取得資金을 어떻게 調達하느냐가 重要한 問題인데, 이 資金調達方法에 따라 株式購入計劃型과 貯蓄獎勵型, 利益分配制度型等으로 나누어진다.

이 밖에도 株式償與制度型等 몇 가지가 있으나 利用되고 있는 事例가 極히 적어 나마지는 省略한다. 株式購入計劃型이란 會社에서 原則적으로 장터금을 支給하지 않고 종업원들에게 全額을 出資하여 分割納入도록 하게 하거나 資金의 一部 또는 全部를 貸付하여 特別한 便宜를 提供하는 方法으로서 內容이 매우 간편, 容易하며 株取得節次에 必要한 諸費用이 節約되고 短期間의 參加가 許容되어 購入希望에 따라 追加購入이 可能하다는 點에서 外國, 특히 美國에서 가장 많이 利用되고 있다.

그러나 이 制度는 従業員의 資力에 限界가 있어 많은 効果를 얻을 수가 없으며, 會社의 收益性과 安定性이 他會社에 比하여 強하지 않는限 従業員들이 株式取得을 주지하는 요인이 된다. 또한 従業員을 勞役提供者로서가 아니라 出資者의 資格으로 會社에 參與시키는 것이므로 勞使平等과 勞使協調를 目的으로 하는것과는 本制度의 취지가 위배되며 特殊從業員과 非特殊從業員間의 利害關係의 對立으로 因하여 従業員의 결속을 저해하고 있다는 見解의 差를 들고 있다. 또 지축장려형은 従業員 紙與의 一部 控除 또는 全額等의 方法에 依하여 繼續的으로 貯蓄을 시켜 이에 對하여 一定比率의 自社株式을 주는 方法으로 従業員

의 福祉向上의 큰 政策이라고 볼수 있다. 이 型은 自社株가 會社와 従業員과 共同投資形式으로 되어있어 參加期間이 長期化, 安定株主形成의 効果를 가지고 있으며 貯蓄額과 投資方法을 従業員이 自由로 選擇할 수 있는 長點이 있으나 運營費用이 많이 듣다는 短點도 있다.

會社收益분배 積立

그리고 利益分配型은 會社收益의 一部를 一定率로 従業員에게 分配積立하여 自社株 購入을 하는 方法으로서 従業員은 勞動力 提供者로서의 企業收益 分配에 參與 시킨 후에 分配한 利益을 株式으로 代替시켜 주는 것이 된다. 이에따라 株式購入型이 갖는 결합을 없애 주며 従業員에게 購入資金을 要求하지 않으므로 資力의 限界性이라는 가장 根本的인 장애가 없어져 愛社精神을 함양하는 동시 生產性을 높여 長期間 積立하는 경우, 退職金의 代替效果가 크게 나타나 세가지 型中 가장 많이 實施되었던 것이다.

이 밖에도 従業員持株制度에 있어 管理方式과 參加方式이 있다.

外部機關에 管理 위촉

管理方式에는 會社가 直接管理하는 方法을 비롯 従業員 團體가 管理하는 方法, 證券會社銀行等 外部機關에 管理를 委任하는 方法등이 있다. 會社가 直接 管理하는 경우에는 月給과

償與額에서 一定額을 控除하여 銀行에 預金하거나 또는 社內預金으로하여 利子를 붙여주며 自社株 購入��에는 定額 또는 定率의 嘉獎金을 支給하는 것이 普通이다. 從業員團體가 管理하는 경우에는 既存의 친목단체가 擔當할 수도 있지만 日本의 경우 別途로 投資金을 構成하는 것이 一般的으로 되어 있다. 證券會社等 外部機關에 委託하는 방법을 從業員個別名으로 하는 것과 投資者가 一括해서 委任하는 것 등이 있다. 그러나 會社管理型은 管理費를 會社가 負擔하는 便宜는 있으나 會社가 株式을 購入할 때 數量과 價格決定에 主導權을 주고 이에 株式의 保管까지 擔當할 때 事實上 讓渡를 制限할 수 있어 會社에는 有利하지만 從業員自身들에게는 不利하다. 그리고 會社가 積立金이나 株式을 企業活動에 流用할 우려가 있으며 商法上 自己株式取得의 問題가 發生된다.

이에 反하여 從業員團體나 外部機關이 管理를 맡을 경우 諸般費用發生을 從業員自身이 負擔하게 된다.

共同 참여는 會社側에 有利

共同參加方式의 長點으로는 從業員의 連帶意識을 높이며 實質的인 讓渡制限의 効果가 있어 會社側에 有利한 反面 短點으로는 從業員의 移動이 많을 때 計算이 複雜, 負擔能力이 平均化할 必要가 있어 從業員間의 連帶意識과 發言權등 從業員의 會社에 대한 對抗權을 높여 會社가 不利한 것은 물론 稅金關係가 複雜,

個別參加方式에는 持株의 과다에 따라 從業員間에 感情的인 問題가 야기될 우려가 있는 同時 이의 讓渡를 억제하기 어려워 連帶意識昂揚에 効果가 적다는 것이 短點이다. 그러나 個別從業員의 負擔能力과 貯蓄能力에 따라 參加시킬 수 있어 讓渡에 對한 干涉이 없으므로 適當한 때에 換金化할 수 있다는 長點도 있다. 從業員持株制度에는 長點과 短點이 있는데 먼저 長點을 보면

- ① 從業員의 勤儉貯蓄을 장려하고
- ② 勞使間의 交際적 役割을 한다.
- ③ 從業員의 愛社精神, 企業經營에 對한 關心을 채고하고 生產性 向上에 一助가 된다.
- ④ 資本調達에 便利하다.
- ⑤ 企業의 民主化 및 經營民主化가 이룩된다.
- ⑥ 從業員을 長期間 確保하는 方策이 된다.
- ⑦ 安定株主層의 確保와 株價安定에 도움을 준다.
- ⑧ 外部資本에 依한 企業支配를 防止할 수 있다.
- ⑨ 企業의 P.R이 된다.

한편 短點으로는

- ① “Too Many Eggs in one Basket”的 性格을 떠어 企業에게 부담을 준다. 即 從業員은 賃金과 貯蓄의 兩面에서 企業에 依存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 ② 株價가 下落하였을 때 피해가 나타난다.
- ③ 資力面에 限界가 있으므로 自社株을 所有하는 從業員 및 그所有株數는 結局 小

數에 그치게 된다.

④ 株式所有從業員과 株式非所有從業員으로
분열시켜 從業員間의 反目을 造成하는 要
因이 된다.

⑤ 勞動力 提供者로서의 資格에 따라 企業
經營 收益分配에 參加하는 것이 아니라
資本出資者로서의 立場에 의해 參加하는
결과가되어 참다운 意味의 勞使協助가 이
루어지지 않는다는 點등을 들 수 있다.

30여개 業體가 實施

끝으로 우리나라의 從業員持株制度의 現況
을 살펴보면 30여개 기업이 從業員持株制度를
本格的으로 實施하고 있다. 最近 상당수의 新
株公募 또는 舊株賣出等 企業公開를 통해 持
株制度의 품이 일고 있다.

그 事例를 볼 것 같으면 이미 韓國證券去來
所에 上場된 公開法人들로서 柳韓洋行從業員
들이 社長所有의 株式을 社友共濟會를 통해
無償으로 贈與받아 現在 發行總株式의 約 3.5
%에 해당하는 株式을 所有하고 있을뿐만아니
라 功勞株支給은 繼續하고 있다. 특히 이 會
社는 앞으로 2給이 되어 2年以上 勤績한 幹
部職員에 對하여는 年間 50%의 有償株를 配
定할 計劃이다.

每年 功勞株를 지급

三養·을 비롯한 일부 食品業體도 해마다 長
期勤績社員에게는 功勞株를 支給하고 전체사원

들에게도 주식을 나누어 주고 있어 실질적으로
공개기업에 속하며 상당한 경영효과를 나타내
고 있다. 이밖에 公募를 한 企業中, 樂喜化學
의 경우엔 從業員의 약 47.7%인 1천86명이
株主로 되어있다.

再保險公社도 從業員 2백 30명의 職員中
1백 40명이, 大韓電線이 1백 51명, 大韓製粉
이 3백 2명, 新進販賣가 3백 41명으로 나타
나 있다. 금년 1月 5일부터 發効된 企業公開
促進法은 企業公開의 命을 받은 企業이 새로
公開할때엔 株式의 10%까지는 從業員이 願하
면 우선 配定토록 規定하고 있고 資本市場育
成法의 關係規定도 이번에 改定되어 總發行株
式의 10%까지는 願하는 從業員에게 우선 配
定토록 義務조항을 더욱 明確히 규정하고 있
다. 그래서 73年度에 新株를 募集 또는 賣出
한 會社中에서는 京南企業이 1백54명, 새한상
사가 66명, 일신방직이 1백2명에 3천7백10株
太平洋化學이 58명에 3만5천4백50株, 三岡산
업이 24명에 7천4백20株로 되어 있으며 非上
場法人中에는 鍾根堂製藥會社가 昨年末에 從
業員持株制를 實施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從業員持株制度를
살펴볼 때 從業員의 福祉向上이나 賯蓄增強을
爲한 配慮보다는 公開法人的 要件이나 增資
對策으로 利用된 경우가 허다했다는 것이 조
금 아쉬움感이 없지 않다. 最近 證券市場에서
는 株價의 높은 時勢로 因하여 株式에 對한
投資熱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現象이 오래 持繼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과같이 從業員持株制度가 순탄하게 이
루어질 것을 기대되고 있다.